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22 선고 2018가단5188147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풍

담당변호사 송명근

피고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D

변론 종결2019. 4. 17.

판결 선고2019. 5. 22.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8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5.부터 2017. 8. 13.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2017. 10. 12.까지 연 9%의, 그 다음 날부터 2018. 6. 30.까지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2018. 9. 28.까지 연 9%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B은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3. 피고 C은 피고 B과 공동하여 피고 B으로부터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제1항 기재 돈을 96,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 2, 3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채권 발생

1) 원고는 2015. 6. 15.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B의 E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피보험자 소외 회사, 보험가입금액 88,000,000원, 보험기간 2015. 6. 15.부터 2017. 6. 15.까지로 한 개인금융신용보험약정(이하 '이 사건 보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 B은 2015. 6. 15. 이 사건 보험약정을 담보로 소외 회사로부터 80,000,000원을 변제기 2017. 6. 15.로 하여 대출받았으나, 2015. 8. 26.경부터 위 대출금(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상환하지 못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

3) 원고는 2017. 7. 14.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보험약정에 따라 위 대출금 채무 88,00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4) 이 사건 보험약정 당시 개인금융신용보험가입에 따른 추가약정 제4조에 의해 피고 B은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피보험자에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변상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원고가 정한 이율은 그 보험금 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30일째까지 연 6%, 31일째부터 90일째까지 연 9%, 91일째부터 2018. 6. 30.까지 연 12%, 그 이후부터는 연 9%이다.

나. 원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일부에 대한 근질권 양수

1) 피고 B은 2015. 5. 20.경 F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100,000,000원으로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 B은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반환채권 중 96,000,000원을 담보한도액으로 근질권(이하 '이 사건 근질권'이라 한다)을 설정해 주고, 2015. 6. 10. F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3) F은 2015. 7. 3.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5.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 소외 회사는 2017. 7. 14. 원고에게 이 사건 근질권자의 지위를 양도하고, 2017. 7. 26.경 피고 C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약정으로 원고가 대신하여 소외 회사에게 지급한 보험금 8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보험금 지급일의 다음 날인 2017. 7. 15.부터 2017. 8. 13.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2017. 10. 12.까지 연 9%의, 그 다음 날부터 2018. 6. 30.까지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 B에게 송달된 2018. 9. 28.까지 연 9%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이 사건 근질권자의 지위를 취득한 원고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연장 등의 사유로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고 B은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③ 이 사건 근질권 설정계약의 제3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 C은 피고 B과 공동하여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①항 기재 돈을 96,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소외 회사가 일방적으로 이 사건 대출금 계약을 해지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이 이 사건 대출금을 대출받아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피고 B을 대신하여 보험금 88,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조순표

별지